

제 1514 호
1990. 9.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공 보 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각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고 시

제306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3
 제307호 사료성분등록 3
 제30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변경허가 4

● 공 고

제507호 도시계획사업(유봉업무설비:주유소)시행완료공고 5
 제508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6
 제510호 종질관리등급표시정지처분 8
 제518호 도로굴착기간조정신청공고 8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53

● 구 고 시		
제21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동작)	8
● 구 공 고		
제80호 신당제1구역주택개발사업시행변경을위한공람공고	9
● 사업소고시		
제28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	10
제29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	10
●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06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우리시관내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대원동 7-1일대(이화여대내)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이화여자대학교시설증축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529,000㎡(도시계획결정면적)

2) 사업내역

가) 기존-동수: 43동

-연면적: 188,453.1㎡

나) 급회허가내역

○ 인문관신축(지하2, 지상7층)

-연면적: 11,321.15㎡

○ 목공정신축(지상2층)

-연면적: 270㎡

○ 공관증축(지상1층 부분)

-연면적: 84㎡

○ 차고사무실 철거

-연면적: 2,704.46㎡

○ 천문대철거 1식

다) 누계: -동수: 44동

-연면적: 197,423.79㎡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서대문구 대원동 11-1 일대

성명: 학교법인 이화학당

디.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91. 3. 31.

바. 위치도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사.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이화학원(수용할 토지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307호

사료 성분 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9. 11

서울특별시장

사료 성분 등록내역

구분	제조(수입)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 성분 량					
								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분류	조화분
신규	(주)미원	서울영등포구대림5동2-6	김재영	나 01-30	배합사료	산란중기 2호	고능력 산란계용	이상 18.0	이상 3.0	이상 0.3	이상 0.5	이하 6.0	이하 15.0

구 분	제조(수 입)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사 료 종 류	사 료 명 칭	사 료 용 도	사 료 성 분 량					
								조판액	조제비	활습	인	조판료	조회분
번 건	동원축산	서울서초구방 백동912-3	송영강	나 01- 12	수입담배 사료	인산칼슘 (모릴로스)	배합사료 첨가용	-	-	15.0	22.0	-	-
경 우	원희축산	서울서초구 서초동 1489-11	"	"	"	"	"	-	-	15.0	22.0	-	-

○서울특별시고시제30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 변경허가

- 우리시 관내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해당학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서울특별시

○ 연세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후생관의 4동 신·증축

라.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797,101㎡

2) 사업내역

· 기존(시행중 포함)

- 동수: 48동

- 연면적: 289,533.76㎡

· 금회시행

- 후생관 신축(지하 1, 지하 5층)

면 6,578.51㎡

- 학생회관증축(지상1층) 면 912㎡

- 인문관증축(지상1층) 면 449.4㎡

- 대강당증축(지상2층) 면 130.17㎡

- 야외화장실신축(지상1층) 면 75㎡

- 계 2동신축, 3동증축 면8,145.08㎡

마. 사업시행자 주소: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법인의 명칭: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성 명: 이천환

바. 사업의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사업의 준공예정일: 1992. 8. 31

아.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자.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수용할 토지 없음)

○ 서울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산 62-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연구소의 1동 신축

라.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3,890,567㎡

2) 사업내역

· 기존

- 동수: 110동

· 연면적: 415,784.49㎡

· 금회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지하1, 지상 3층)
 -연 3,570.14㎡
 -교직원 식당(지상3층)
 -연 1,652.70㎡
 계 2동신축, 연 5,222.84㎡

마. 사업시행자 주소: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성명: 서울대학교 총장 조완규

바.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1991. 12. 31

사.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아. 토지소유자: 국유지(문교부)

○ 단국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용산구 한남동 6번지의 7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주차장일부 용도변경(서관)

라.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141,455㎡
 2) 사업내역
 · 기 존
 -동 수: 21동
 -연면적: 105,175.23㎡
 · 금 회
 --주차장(지하1, 지상2층)
 연 10,109.90㎡
 --기숙사식당(지상3층) 연 2,415.19㎡
 --견시실(지상4층) 연 570.60㎡
 계 1동 연 13,095.15㎡

마. 사업시행자 주소: 용산구 한남동 산 8-3
 성명: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이용우

바.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1992. 12. 21.

사. 위치도및 평면계획도: 별첨(생략)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단국대학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507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주유소)
 시 행 안 료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553호(85. 8. 19)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주유소)시행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2의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9. 7

서울특별시 장

다 음

-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6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주유소)시행허가
- 사업시행자: 송파구 문정동 129-5 대 신석유(주) 대표이사 이인석
- 사업기간: 85. 8. 19~90. 6. 30
- 사업의 규모
 -대지면적: 8,290.4㎡
 -건축면적: 1,132.5㎡
 -건축면적: 3,939.5㎡
 -세부시설

(단위/㎡)

시 설 명	규 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주 유 소	350	450	

시 설 명	규 모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부대시설(기숙사)	585	3,162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서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9. 10 서울특별시장
" (창고)	130	260	
" (화장실)	67.5	67.5	
계	1,132.5	3,939.5	
●서울특별시공고제508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도시계획사업(공원) 결정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의 3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의의권리명세
1	현저동 101	대	74,032.5	국(법무부)	
2	101-1	전	1,570.9	"	
3	101-223	대	425.4	서울시	
4	101-224	"	55.2	"	
5	101-225	"	43	"	
6	101-226	"	325	"	
7	101-231	"	1,348.8	국(법무부)	
8	101-238	전	8,878.3	"	
9	101-286	대	169.1	"	
10	101-287	"	81	"	
11	101-365	"	254.5	"	
12	102-3	"	244	서울시	
13	102-8	"	91.6	현저동 44-877 김광환	
14	102-9	"	21.8	현저동 102-9 윤성광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관리명서
15	102-13	대	6.6	현저동 102-9 명영계	
16	102-17	"	2,059.5	서울시	
17	102-22	전	1,632.2	"	
18	102-26	대	128.9	"	
19	102-29	전	47.3	"	
20	102-30	대	99.2	"	
21	102-31	"	4	국(법무부)	
22	102-52	"	13.6	현저동 102-9 명영계	
23	102-54	"	56.9	서울시	
24	102-58	전	199.5	국(법무부)	
25	102-122	도로	294.2	"	
26	102-3	대	3,362	서울시	
27	102-8	"	52.9	"	
28	107-44	"	69.4	상량촌읍	
29	107-45	"	35.8	부천시남구 소재동 110-46 신대일	
30	107-46	"	35.9	현저동 107-46 전춘기	
31	107-463	"	36.9	부천시남구 소재동 110-46 신대일	
32	107-464	"	40.1	현저동 107-46 전춘기	
33	산 5-5	임	1,661.3	국(법무부)	
계	33 필지		97,377.3		

건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지속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관계인 주소성명
1	서대문구 현저동 102-8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점포 주택	124.95	218.30	서대문구 현저동 102-8 김창환
2	102-9	"	"	47.17	101.40	102-9 윤성광
3	102-13, 52	"	"	72.73	89.70	102-13 명인섭
4	107-45	목조, 외급	"	29.75	50.5	107-45 신대일
5	107-46	"	"	41.65	60.8	107-46 전춘기
계	5 동			316.25		

●서울특별시공고제510호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처분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 품질관리 등급에 대한 표시정지 처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0. 9. 11

서울특별시

- 다 음 -

1. 사정 공장명 : 대흥정밀공업(주)
2. 대표자 : 유 만 복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84-64
4. 사정등급 및 사정번호 : 2급 등급, 가 2갑-303
5. 사정상품 : 전화기부품(다이나믹 유니트)
6. 표시정지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처분 사유 : 관리사항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518호

도로굴착 기간조정 신청공고

서울특별시 관리하는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등)을 설치 또는 개수하기 위하여 '91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도로굴착 기간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90. 9. 16

서울특별시

- 다 음 -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신청기간 : 1990. 11. 1-11. 10
3. 구비서류 :
 - 1) 신청서 2부(각 구청 토목과에 비치)
 - 2) 위치도 2부(1/3,000 현황도면)
4. 접수처 : 도로관할구청 토목과
5. 참고사항
 - 가. 도로굴착 기간조정후 굴착 및 복구공사물 시행할때 별도 굴착승인 및 복구허가불 받아야 합니다.
 - 나. 건물신축등에 따른 전화, 전기, 상하

수도, 도시가스등의 설치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하 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기간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별 굴착승인이 불가능합니다.(단, 뒷풀목의 가경용 소규모 굴착은 도로굴착기간 조정없이 굴착승인이 가능합니다.)

구 고 시

●동작구고시제21호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허가

1. 서울시 고시제274호('86. 5. 1)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동작구 고시제11호('89. 3. 3)로 부분시행 허가된 관내 도시계획사업(시장)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인니다

1990. 9

동작구청장

- 다 음 -

-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 노량진동 312-6의 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삼거리시장)
- 다.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 : 3,033㎡
 - 건축연면적 :
 - 당초 : 8,281.98㎡(지하2층, 지상4층)
 - 변경 : 8,828.27㎡(지하3층, 지상4층)
- 라. 사업시행자
 - 당초 : 강서구 화곡동 1023 준영실업(주) 대표 채현준
 - 변경 : 중구 신달동 432-1 삼지기업(주) 대표 최석문
- 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 당초 : '89. 4. 22-'89. 12. 30
 - 변경 : '89. 4. 22-'91. 12. 30
- 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구 공 고

1990. 9. 18

중 구 청 장

◎중구공고제80호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 지정되어 서고시 제595호('84. 10. 11)호 서고시 제301호('87. 4. 30)호 사업계획 결정하고 서고시 제280호('85. 4. 26), 서고시 제637호('87. 9. 14) 및 서고시 제180호('89. 4. 10)호 사업시행(변경) 인가권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요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관계서류의 공람)에 의거 관계서류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 고 내 용 -

- 가. 공람기간 : 1990. 9. 13 - 1990. 10. 18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주택과) 및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 다.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주택과)

라. 공람요지

- 1) 사업의 명칭 : 신당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 57번지 일대
- 3) 시행면적 : 48,071.5㎡
- 4) 신청인 : 신당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 5) 시행계획 : 아파트 12-15층 10동 942가구 건립 및 부대 복리시설설치 (유치원 건립)
- 6) 사업시행기간 : '85. 4. 26 - '90. 12. 31
- 7)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 내역

가.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당 초 (㎡)	변 경 (㎡)	변 경 사 유
총 면 적	48,024.3	48,071.5	'89. 5. 18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고시제228호) 면적(정분할측량으로 면적증 47.2㎡)으로 정정
택 지	45,520.4	45,567.6	
도 로	570	570	
기 타	1,933.9	1,933.9	

나. 복리시설 설치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어린이놀이터	2,177.23㎡	2,294.75㎡	실제놀이터 면적증
비상저수시설	2,830 Ton	2,855 Ton	유치원 저수시설포함.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공원 또는 녹지시설	15,098.24㎡	13,968.69㎡	설계조정면적
판매시설 (상가)	2,713.32㎡	3,090.54㎡	'88. 6. 18 사업시행 변경 인가 면적
유 치 원		542.83㎡	유치원 건립 (지하1층 지상 2층)

다. 자금운영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계	42,807,615	47,676,998	분양가인상 (아파트상가)
공사비(설계비포함)	27,371,120	28,594,800	유치원 건립 및 공사비 인상 (관리처분인가 금액)
손 실 보 상 비	12,000	12,000	
조 합 운 영 비	220,000	220,000	
부 가 가 치 세		856,500	신설 (국민주택이상남부)
공 과 잡 비	187,000	188,000	사업기간연장으로 증액
아 파트 대 물 보 상 비	14,600,495	17,805,698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원수입
차 입 금 이 자	476,000		삭제 (개별정수)

사업소고시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8호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0. 9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한강) 송파구 잠실동 19 번지선 (한강)	하천	1,142㎡	유선장설치	1990. 9. 11	인원시 남동구 만수동 산1-2 번지	(주)원광 대표이사 류복수
			789.6㎡		1991. 9. 10 (1년간)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9호

하천점용기간 연장 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9.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0. 9.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한강)	하천	1,396.82㎡	유선장	1990. 9. 11	인천직할시 북구	(주)세 모
			1,452.53㎡	실 치	-1991. 9. 10 (1년간)	심정동 558-10	대표이사 유 병 언

사 령

◎1990년 9월 11일자

7급공무원 파견

령 제338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문 호	예산담당관 파견 (‘90. 9. 20 - 별도지시시까지)	마 포 구	지방행정주사보
장 변 호	청소1과 파견 (‘90. 9. 11 - 별도지시시까지)	강 남 구	"
황 요 한	"	영 등 포 구	"
양 시 욱	"	양 천 구	"

◎1990년 9월 13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 면직

령 제339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순 복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6급상당 (전산처리사)

◎1990년 9월 15일자 7급 기술직공무원 특별임용 (시립대 장학생)		형 제340호	
성 명	발 명 사 랑	연 부 서	
장 상 규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신 규	
문 인 식	하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	
이 동 일	생활체육과 근무를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	"	
공무국의 여행명령 변경 통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 속	국제교류과	내 무 국	
직 명	지방행정주사	지 방 서 기 관	
성 명	신 현 봉	김 충 환	
여 행 국	북 경	좌 동	
여 행 기 간	'90. 9. 21-9. 26(6일간)	"	
여 행 경 비	시 비	"	
서 율 특 별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이 연 권 (李 連 權)	소 속 구로구 도시정비과
	본 격	충남 대천시 흥도동 150	직 명 지방토목기원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0-302		
출석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일시	1990년 9월 25일 14시 00분		
출석장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p>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년 9월 10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right;">이 연 권 귀하</p>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격		직 명
주 소			
<p>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p> <p>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